

# 2022년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모집공고

코로나19 이후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원상복구비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충격 최소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『소상공인 폐업·사업전환 지원사업』을 시행하오니,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6월 7일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

## □ 사업개요

### ○ 지원대상

- 인천소재 폐업(예정) 소상공인(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)
- 인천소재 기폐업 소상공인(2022. 1. 1. 이후 폐업자 대상)
  - ※ 공고일 기준, 사업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

### ○ 지원내용 : 가.나. 2개 분야 사업 동시 지원

#### 가. 재기 지원 컨설팅

-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66만원 이내(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징수액 포함)
- 지원내용 : 원활한 사업정리 및 사업전환,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 전략, 세무, 부동산, 법률 등 전문 컨설팅 지원

#### 나.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

- 지원금액 :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(지원금한도 내 공급가액의 90% VAT제외)
  - ※ 자기부담금 : 공급가액의 10% + VAT
- 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지원
  - ※ 전용면적 제한 없음, 재기 지원 컨설팅 후 비용지원
  - ※ 자가 소유 부동산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포함) 사업장 지원 제외

## □ 지원 내용

- 재기 지원 컨설팅(업체당 2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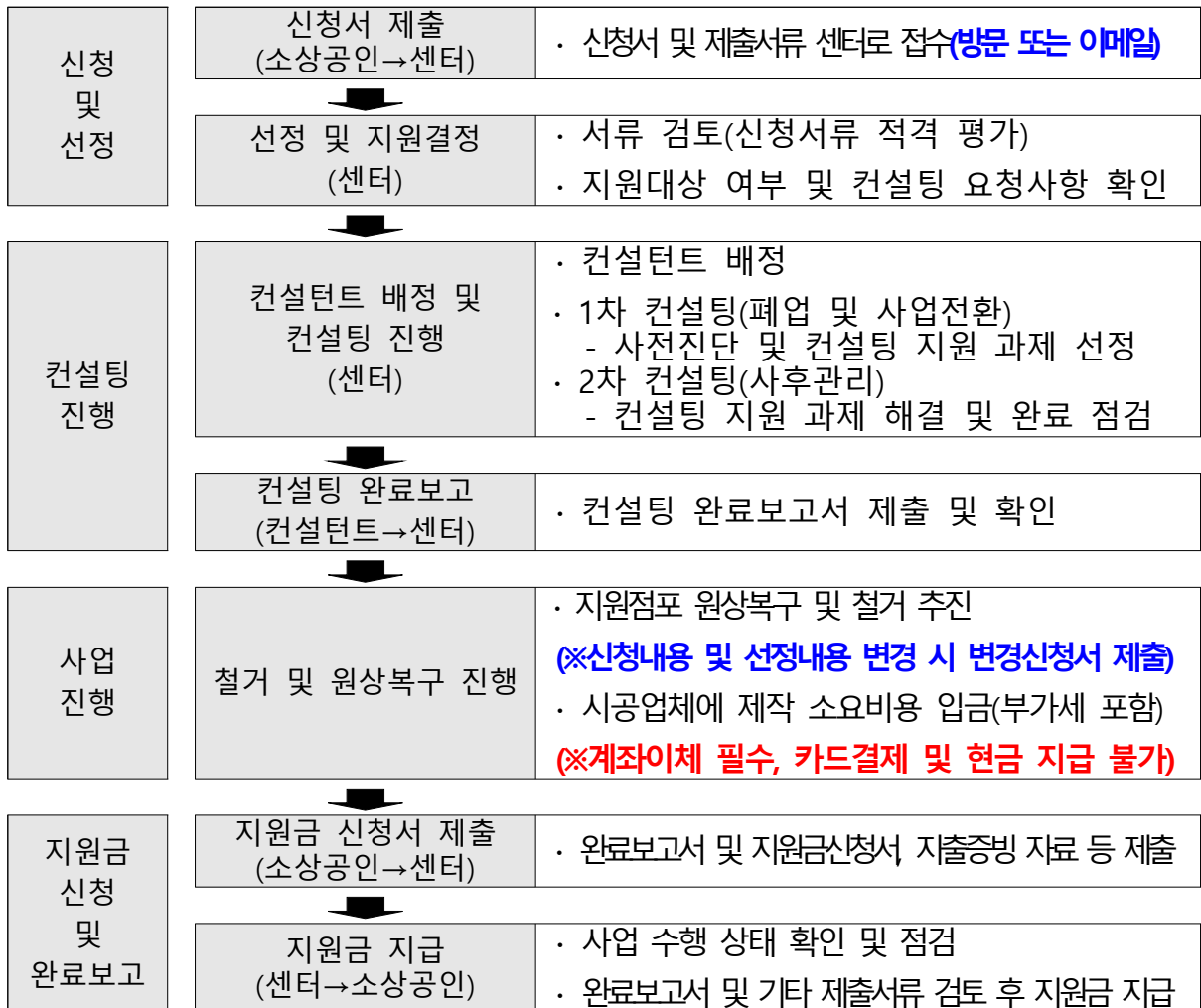
구 분		지 원 내 용
폐 업	사업정리	■ 사업정리 신고사항 및 절세방법, 공정견적 산출 등
재 기	재창업·취업	■ 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, 창업컨설팅, 일자리 안내 등

-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(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)

구 분		지 원 내 용
■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		폐업 시 필요한 원상복구 및 철거 공사, 운반비 등 비용 지원

※ 자기부담금 : 공급가액의 10% + VAT

## □ 지원절차



※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2주 이상 소요

## □ 신청 · 접수

- 신청 기간 : 2022. 6. 7. (월) ~ 2022. 12월까지(예산 소진 시, 조기 종료)
  - ※ 연중 상시 신청·접수
- 신청방법
  -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([www.insupport.or.kr](http://www.insupport.or.kr)) 「**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**」 신청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
  - 이메일(tjgusdn2@insupport.or.kr) 또는 센터 방문 접수  
(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6층)
  - 개별신청 원칙(대리접수 불가)
- 제출서류(재기지원 컨설팅)

제출서류(필수)	부수	비고 (발급처 등)
① 사업 지원신청서	1부	[제1호 서식]
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1부	[제2호 서식]
③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	1부	(폐업 예정자) 사업자등록증명원[발급처 : 세무서, 홈택스] (폐업 완료자) 폐업사실증명원 사본[발급처 : 세무서, 홈택스]
④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(폐업 예정자)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(폐업 완료자)	1부	(폐업 예정자) 점포철거·원상복구 견적서 및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(폐업 완료자) 점포철거·원상복구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 확인증 및 시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<b>※ 사업자등록증 상 "인천광역시" 소재지 업체만 가능</b>
⑤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각 1부	<b>※ 국세 완납증명서, 지방세 완납증명서 모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분</b>
⑥ 2021년 매출액 증빙서류 (과세사업자, 면세사업자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)	1부	<b>[과세사업자일 경우]</b>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
	1부	<b>[면세사업자일 경우]</b> 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⑦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(상시근로자 유·무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)	1부	<b>[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]</b> -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	1부	<b>[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]</b>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### ※ 서류 작성 시, 유의사항

-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성명, 싸인 또는 도장 필수
-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, 공동대표 성명 및 싸인 기재

○ 제출서류(점포철거지원 비용)

제출서류(필수)	부수	비고 (발급처 등)
① 지원금 신청서 및 대상 확인서	1부	[제3호, 4호 서식]
② 사업 완료보고서	1부	[제5호 서식]
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1부	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(폐업자에 한해서)
④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	1부	인천시 소재 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
⑤ 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	점포철거 진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
⑥ 임대차계약서	각 1부	점포 임대차계약서
⑦ 폐업사실증명원	1부	세무서, 홈텍스 발급
⑧ 통장 사본	1부	지원금 받을 대표자 통장]
⑨ 전자세금계산서	1부	점포철거 진행업체 발급
⑩ 계좌이체 확인증	1부	입금자 성명/수령자 성명/ 계좌번호/입금일 확인 <b>신용카드결제 불가</b>
⑪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지	1부	[제6호 서식]

□ **지원제외 대상**(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 시, 지원대상에서 제외)

- 자가 건물 사업자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-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기준)
- 소상공인 기준(매출액, 종사자 수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[별표2]
-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철거한 경우
-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, 단체 또는 조합
- 국고 및 시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(Ex. 장기요양 수행기관 등)
- 관련 법률 위반, 과제부실 등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□ **문의처**

-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☎032)715-4215

# 별표 1

#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9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9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<비고>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**별표 2**

**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1	주류 도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221 중	주류 소매업 * '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지정된 "전통주 등"의 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*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5102	여관업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*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신청가능 -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, 알선하는 산업활동.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(인적용역제공자)은 지원제외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(68221, 682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,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
64992	지주회사

표준산업분류	업종
71531 중	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* (예시) 기획부동산 등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 * 단,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안마원 규모(300M <sup>2</sup> 이하)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